

제24기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덕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18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년 03월 09일 (월) 오전 11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새마을 교통회관 제2세미나실
3. 회의 목적 사항

가.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별첨1 정관변경 신규대비표 참조)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제2-1호 의안: 사외이사 이성수 신규 선임의 건

성명	출생 연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포함)
이성수	1974-02	1년	신규 선임	서울대학교 경영학사 Santa Clara University Law School LLM 前 LG-EDS Systems Consulting 부문 前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現 법무법인 그루제일 변호사

- 제2-2호 의안: 사외이사 김윤홍 신규 선임의 건

성명	출생 연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포함)
김윤홍	1979-10	1년	신규 선임	고려대학교 경제학 학사 Harvard Business School MBA 前 McKinsey & Company, Business Analyst/Associate 前 Citigroup Global Markets Asia (Hong Kong), Managing Director 前 CJ ENM 최고전략책임자

- 제2-3호 의안: 사외이사 임상미 신규 선임의 건

성명	출생 연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포함)
임상미	1981-07	1년	신규 선임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 학사 前 감사원 前 선진회계법인 회계사 前 인덕회계법인 회계사 現 한길회계법인 감사본부 회계사

- 제2-4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Shunsuke Nakahama 신규 선임의 건

성명	출생 연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포함)
Shunsuke Nakahama	1977-03	1년	신규 선임	University of Tokyo, BS & MS 前 McKinsey & Company, Associate Principal 現 Bain Capital Private Equity 파트너

- 제2-5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Naofumi Nishi 신규 선임의 건

성명	출생 연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포함)
Naofumi Nishi	1979-12	1년	신규 선임	University of Tokyo, BA & MA Stanford University, MBA 前 McKinsey & Company, Associate 現 Bain Capital Private Equity 파트너

- 제2-6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Haiyan Zhu 신규 선임의 건

성명	출생 연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포함)
Haiyan Zhu	1986-08	1년	신규 선임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BA University of Chicago Booth School of Business, MBA 前 Bain & Company, Case Team Leader 現 Bain Capital Private Equity 파트너

- 제2-7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김동욱 신규 선임의 건

성명	출생 연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포함)
김동욱	1976-10	1년	신규 선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학사 Columbia Business School, MBA 前 Citigroup Global Markets Asia, Managing Director 現 Bain Capital Private Equity 파트너

제3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상근감사 김현승 신규 선임의 건

성명	출생 연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포함)
김현승	1979-11	3년	신규 선임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사 前 Bain & Company, Manager 前 Unison Capital, Director 現 Bain Capital Private Equity 매니징디렉터

4. 경영 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경영 참고사항을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 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 행사 : 주주 본인의 신분증
- 대리 행사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 사항 기재, 인감 날인 必), 인감증명서

7. 기타 사항

비용 절감을 위하여 주주총회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2월 20일

주식회사 에코마케팅
대표이사 김철웅 (직인생략)

기 존	개 정
<p>제13조 (사채의 발행)</p> <p>1.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2.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p>	<p>제13조 (사채의 발행)</p> <p>1. (좌동)</p> <p>2. 이사회는 대표 집행임원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p>
<p>제17조 (소집권자)</p> <p>1.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이 소집한다.</p> <p>2. 대표이사(사장)이 유고시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7조 (소집권자)</p> <p>1.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 집행임원, 또는 이사회가 달리 소집권자를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한 소집권자가 소집한다.</p> <p>2. (삭제)</p>
<p>제20조 (의장)</p> <p>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p> <p>2.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0조 (의장)</p> <p>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 집행임원, 또는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선임한 자로 한다.</p> <p>2. (삭제)</p>
<p>제32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p> <p>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p>	<p>제32조 (집행임원 및 대표집행임원의 선임)</p> <p>1. 회사는 대표 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을 둔다. 대표 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수, 직책, 보수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2.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집행임원을 선임한다. 집행임원은 이사회의 감독 아래 회사의 업무 집행을 전담하고, 기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다.</p> <p>3. 회사가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을 두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 집행임원을 선임한다. 다만, 집행임원이 1명인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이 대표 집행임원이 된다.</p> <p>4. 대표 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임기는,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p>
<p>제33조 (이사의 직무)</p> <p>1.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p> <p>2.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사전에 정한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33조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직무)</p> <p>1. 대표 집행임원은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p> <p>2. 집행임원은 대표 집행임원을 보좌하고 회사의 업무를 분장한다.</p> <p>3. 대표 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4. 대표 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의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p>

-	<p>제33조3 (이사 및 집행임원의 책임감경) (신설) 상법 제399조 및 제408조의 8에 따른 각 이사와 집행임원의 책임은 각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각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 2, 제398조 및 제408조의 9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4조 (이사회회의 구성과 소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를 소집한 다른 이사를 이사회의 의장으로 한다. 5.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진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p>제34조 (이사회회의 구성과 소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좌동) 2. 이사회는 각 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4. (좌동) 5. (삭제)
<p>제46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 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동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 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고,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 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p>제46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회사의 대표 집행임원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 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대표 집행임원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동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 집행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대표 집행임원은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대표 집행임원은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 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고,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 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